



제 6073 호
경기도보

발행일 | 2018년 10월 19일

발행 | 경기도

편집 | 언론협력담당관

※ 도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.



Global Inspiration
세계속의 경기도

차 례

고 시

○경기도고시제2018-5199호 양주옥정숲산림욕장(공립)조성계획승인고시 3

공 고

○경기도공고제2018-3355호 수원시옥외광고물등의특정구역통합지정및표시제한·완화고시안
행정예고공고 3

○경기도공고제2018-3357호 하남시옥외광고물등의특정구역통합지정및표시제한·완화고시안
행정예고공고 32

○경기도공고제2018-3358호 측량업신규등록공고 44

○경기도공고제2018-5954호 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44

○경기도공고제2018-5956호 후원방문판매업폐업공고 46

도 의 회

○경기도의회공고제2018-184호 경기도도시광산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입법예고 46

○경기도의회공고제2018-185호 경기도친환경소재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입법예고 50

○경기도의회공고제2018-186호 경기도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52

시군행정

○안산시공고제2018-1532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실시계획열람및사업인정에관한주민등의
의견청취정정공고 58

○안산시공고제2018-1533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실시계획(변경)서류의열람공고 67

○평택시고시제2018-310호 평택(동부)소로3-537호선실시계획(변경)인가고시 71

○평택시고시제2018-311호 평택(동부)7호대학교(평택대학교)실시계획(변경)인가고시 74

○평택시고시제2018-312호 평택(동부)1호전기공급설비(송전선로)실시계획(변경)인가고시 76

○평택시고시제2018-313호 평택신촌지구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(변경)인가고시 77

○평택시고시제2018-314호 진위1호체육시설결정(경미한변경)및실시계획인가고시 160

○평택시공고제2018-2324호 도로의노선지정(변경)에관한공고 162

○의정부시고시제2018-222호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도로(중로3-3호선외3개소)사업 사업
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174

경 기 도 보

제6073호

2018. 10. 19 (금)

○의정부시고시제2018-224호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:공원]결정(경미한변경)및도시계획 [공간시설:공원(직동근린공원)사업실시계획인가(변경)정정고시	178
○김포시고시제2108-230호 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및지형도면고시	198
○김포시고시제2018-231호 김포마송택지개발사업지구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및지형도면고시	200
○광주시고시제2018-1800호 쌍령1지구도시계획시설(공원및녹지)사업공사완료공고	204

김포시 고시 제2018-230호

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- 1.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-51호(2013.01.25.)로 택지개발사업 1단계 사업 준공된 한강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장기 미매각 연립주택용지(Bc-02, Bc-04)에 대해 장기방치로 인한 환경치안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주택유형 및 평균규모를 변경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하고, 동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- 2.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.

2018. 10. 19.
김 포 시 장

1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의 결정(변경) 내용

-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 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②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 - 1.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 - 가. 용도지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2.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 - 가. 교통시설
 - 1) 도로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2) 주차장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나. 공간시설
 - 1) 광장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2) 공원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3) 녹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4) 공공공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다. 유통·공급시설
 - 1) 수도공급설비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2) 전기공급설비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3) 열공급설비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4) 방송·통신시설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라. 공공·문화체육시설
 - 1) 학교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2) 문화시설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3) 청소년수련시설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4) 사회복지시설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마. 방재시설
 - 1) 하천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2) 방수설비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3) 우수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바. 보건위생시설
 - 1) 종합의료시설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사. 환경기초시설
 - 1) 폐기물처리시설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- 가. 단독주택용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나. 근린생활시설용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다. 문화예술용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라. 공동주택용지 : 변경(변경사항만 게재)
 - 1) 아파트용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2) 연립주택용지 : 변경(변경사항만 게재)
 - 가구 및 획지조서 : 변경없음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 적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
Bc-02	Bc-02	43,164.1	Bc-02	43,164.1	조서 변경없음
Bc-04	Bc-04	44,376.7	Bc-04	44,376.7	조서 변경없음

-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: 변경
 - 연립주택용지(Bc-02, Bc-04) 주택규모 변경 : 85㎡ 초과 → 60~85㎡이하
- 마. 상업업무용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바. 도시지원시설용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사. 자족시설용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아. 농업관련용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자. 공공건축물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
④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)

- 가. 단독주택용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나. 근린생활시설용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다. 문화예술용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라. 공동주택용지 : 변경(변경사항만 게재)

< 공동주택(연립주택)의 유형 · 세대수 · 건폐율 · 용적률 · 높이 >

구분	획지 번호	주택유형 (㎡)	획지면적 (㎡)	세대수 (호)	인구수 (인)	평균규모 (㎡)	최고 층수	건폐율	허용 용적률	강화 용적률	비고
기정	Bc-02	85㎡초과	43,164.1	322	870	134	4층	40%	100%	95%	
변경		60-85㎡이하	43,164.1	322	870	113	4층	40%	100%	95%	
기정	Bc-04	85㎡초과	44,376.7	332	900	134	4층	40%	100%	95%	
변경		60-85㎡이하	44,376.7	332	900	113	4층	40%	100%	95%	

주) 용적률은 허용용적률과 강화용적률로 구분되며,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

주) 층수산정시 테라스하우스등의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본다.

- 마. 주상복합용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바. 상업·업무시설용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사. 수변상업용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아. 기타시설용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
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- 가. 단독주택용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나. 근린생활시설용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다. 문화예술용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라. 공동주택용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마. 주상복합용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
- 바. 상업·업무시설용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사. 수변상업용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아. 공공시설물 및 기타시설용지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
⑥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- 가. 특별계획구역 지정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나.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계획
 - 1) 특별계획구역2(수변상업지구)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2) 특별계획구역3(문화예술지구)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3) 특별계획구역4(생태시범마을)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다.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
 - 1) 특별계획구역2(수변상업지구)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2) 특별계획구역3(문화예술지구)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3) 특별계획구역4(생태시범마을)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
⑦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
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도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나. 용도지역·지구의 세분에 관한 결정(변경)도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다.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(변경)도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라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도 : 변경 - 게재생략
- 마.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도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
⑧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: 변경있음 - 게재생략

- 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: 게재생략
- 3. 관계도서 및 시행지침은 김포시청 도시계획과(☎ 031-980-2440, 2441) 및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(☎ 031-980-5224), 구래동 행정복지센터(☎ 031-980-5969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, 일반인에게 열람

김포시 고시 제2018-231호

김포마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- 1.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-841호(2012.06.22.) 및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-134호(2015.02.11)로 택지개발사업 1, 2단계 사업 준공된 마송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장기 미매각 공동주택용지(B1, B2, B4, B6, B7)에 대해 장기방치로 인한 환경·치안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최고층수 및 주택형 규모를 변경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하고, 동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- 2.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.

2018. 10. 19
김 포 시 장

①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의 결정(변경) 내용

- 1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2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(S=1/3,000)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- 3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 - 가. 용도지역·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나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 - 1) 교통시설
 - 가) 도로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
 - 나) 주차장 : 변경없음 - 게재생략